

□ 김형찬군 분신사건, 그 이후

김형찬군(유전 4) 국가상대로 소송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의 공안분위 조성 여부를 가릴 의미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안기부요원에 의한 불법연행·폭행에 항의,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김형찬(유전 4)군이 국가를 상대로 4명의 안기부요원 구속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308호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현재 심리를 끝내고 3월14일 2차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군은 김철준, 김동균당당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안기부의 불법연행과 협박성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분신이라는 탈출책을 택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행 당시인 12월 5일 김군은 후배의 자취방에서 후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안기부요원이 방으로 들어와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재규(경인총련의장)군의 영장을 제시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 속에 김군은 분신자살을 기도, 수원 동수원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강남순화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된 후 법원의 불구속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 5개 중대(6백명)가 병원을 포위, 김

개하고 있다.

선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수사촉구서명운동은 현재 2만4천여명이 참여하였고, 대책위 주최 문화제는 “역사의 물결을 민주주의 바다로”(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김형찬군 캐슈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오는 16일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구속하고자 하는 법인은 없으나 법인은 신장소에서 다른법인을 검문·체포할 수 있다”는 직무집행. 법상 검문과 체포의 권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속영장이 타인의 것이었고, 대책위 대표단의 안기부 방문을 통해 연행시 폭행사실이 확인되었음을 미루어 볼때 연행과 폭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군은 자신에 대한 연행과 폭행이 안기부의 공안분위기 조성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통과후 반정부기류를 변화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본보기였다는 확인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김형찬 분신자살기도 사건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김운용 기자)

안기부 검문과 체포의 권리 내세워 합법 주장

타인 구속영장 연행 폭행 사실로 이에 맞서 대책위

하면서 불법연행하였다. 경기도 경찰청으로 연행도중 폭행과 협박이 자행되었고, 신분확인후에도 국가보안법위반(구국의 소리방송 디스크 복제·소지), 공문서 위조(타인의 주민등록증 위조·사용), 병역법 위반등의 혐의로 감금과 폭행이 계속

군의 친지·학우들이 검문과 출입통제를 받아야 했던 수도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김형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정계·종교계·법조계 인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식발족하였다.

전국연합, 인천공안탄압분쇄위원회와 1백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는 김형찬군 지원사업, 선전사업,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등의 활동을 전

향해 대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다각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재판에서 안기부측 변호사와 정부측 변호사는 “안기부의 신원조사와 범인연행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그 발언의 중요한 근거로 국가보안법·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군의 “중거인명가능성, 도주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강단시론

이 광 재

(언론정보학부 교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연달아 발생한 노동법·안기부법 파동, 한보사건,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 이한영 피습사건,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등의 큰 사건 보도로 인하여 이 법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법의 내용은 물론 이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청소년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이 법은 전문 5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폭력성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방화, 세계화, 자율화 정책이 부응해서 모든 것이 탈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이 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서 규제내용을 강화시켰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법은 자유시장경쟁원리와 물질만능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법 집행의 실효성과 보호업무의 신속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검사 및 조사관, 수거·파기 명령권, 시청 명령권 등의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격상시켜 동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장해 내는 업체나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법규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에 있는만큼 이 법 시행에 앞서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는 전자, 통신, 방송, 인쇄기술 및 약품산업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환경

청소년보호법과 국민의식

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정의와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친권자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해야 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관련 주제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의무, 표창의무, 판매금지, 방송시간 및 광고시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지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이 법은 규정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15인 이상 20인 이

신성의약품, 환각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비디오물 감상실 등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유해업소, 음란·폭력물로 가득찬 각종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람으로 성인들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불건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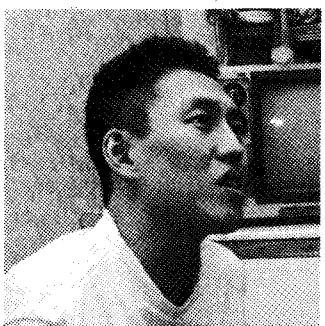
법의 중요성 홍보해야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범국민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이 법이 제정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관심 있는 몇사람이나 관련 몇몇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청소년은 모두 우리의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갖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관련 정부 당국은 이와 같은 법 제정의 개요와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각지대면 그것은 쓸모가 없게 된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청소년 분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동 위원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인터뷰

진실 향한 투쟁, 지켜봐 주십시오



김 형 찬
(유전 4)

“사고 후 두달 정도는 움직일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걷는 운동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12월 5일 안기부요원의 불법연행·폭행에 항의하여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김형찬(유전 4)군은 화상의 아픔도 잊은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또한 김군은 “도움주신 분들에게 신문지사를 통해서나마 감사드리고 싶다”며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키려는 태도가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김군은 “진실을 밝혀려는 자세를 견지한 채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임하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희망을 말했다.

치료 중에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화상치료 과정에서의 육체적 고통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친지, 경화학우,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얼마전 분신자살한 한상근(용인대 3)군에 대해서는 “분신자살 할 용기를 가지고 삶에 더욱 충실했으면 좋았을텐데... 한군의 죽음에 너무 아쉽습니다”라며 “시민여러분들이 그의 분신자살을 나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듣던 일을 직접 겪고나니 억압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저 자신부터 깊은 관심을 가질것을 다짐했습니다”라며 굳은 결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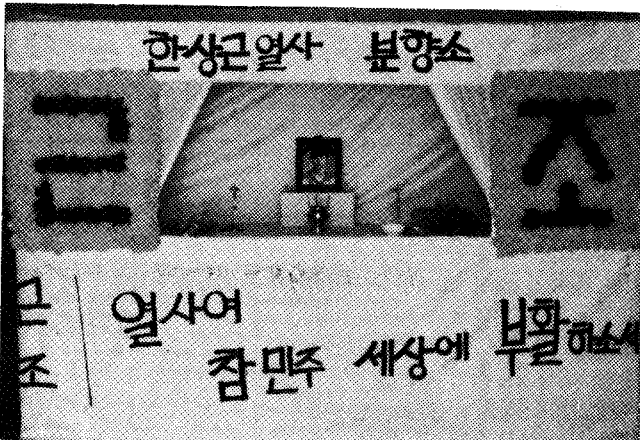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김군은 “진실을 향한 저의 투쟁을 관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경화학우에게 남겼다.

(사회부)

분신경위 불분명,

경찰과 용인대 학생측 충돌 예상

현장취재



▲한상근 열사 애국학생장례위원회는 한군의 장례식을 애국학생장으로 치루었다.

지난 2월 10일 새벽 4시경 용인대 학생회관에서 한상근(용인대 경기3)군이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사건 후 3일만인 13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군이 분신 당시 유서를 남기지 않아 분신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평소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사운영에 회의를 느낀다는 글들을 남긴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학내문제에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군의 자살사건이 알려지자 용인대 학생회측은 사건당일 학생회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 학교측의 구체적 대책안을 촉구키로 했다.

또한 학생회측은 이 사건에

대해 “술에 만취하여 가정문제를 비판, 분신자살을 했다는 경찰측의 공식발표와 한겨레신문(2월 11일자)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발표·보도기사의 정정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측은 이 주장의 근거로 사건 당시 한군의 가정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 있었고 등록금 문제도 한군의 둘째형이 납부해 주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한편 한군의 장례식은 경기 동부총련과 용인대 총학생회 주최로 본 장례식은 용인대 노천극장에서, 노제는 용인통일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사회부)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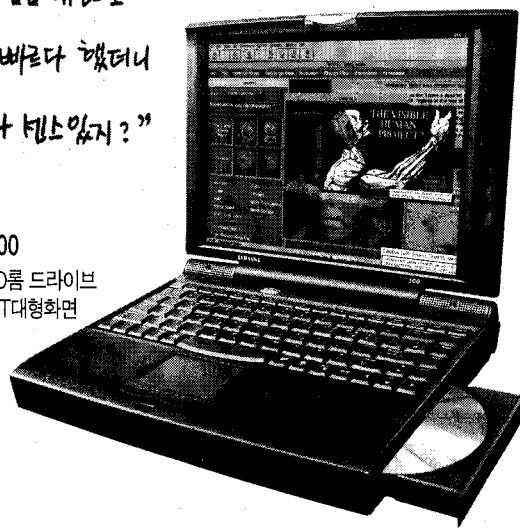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만득이, 대학 가다!



고정강래. 학수고대! 도대어 Freshman이 된 만득이. 미려의 포복도 어마어마하게 일하잖지만, 폭풍처럼 솟아나는 리포트 테제에 놀라다. 도서관의 다락위 서재. 양도 가려운 한테이처럼 뽕아들고 전전공하고 있는데, 아! 열거리에 양아였던 여학생이 귀재주인 줄이야! 가리고 있던 노트북을 한 열거리 CD와 인터넷으로 손쉽게 자료를 검색, 정리해 주는 거 아니겠어? 저열은 거칠 리포트를 세시간만에 끝내줬어. 영아나 괴짜가겠어. “어쩐지, 귀신같은 뽕새네.” 남한의 말도 배워서 알고, 뽕을 꼬며 겁주는 우리의 만득이 - 그제, 그제가 수줍은 두 과제를 돌려 맡겨. “그래, 만득아, 나야!” 오악~~! 그 여학생의 뽕이 점점 귀신으로... 뽕귀로! 어쩐지, 귀신보다 더 빠르다 했더니 뽕귀라는 만득이를 붙잡으며 귀가 뽕귀? “만득아, 나 뽕귀?”

삼성 노트북 PC - 센스 아카데미 500
■ 133MHz 펜티엄® III 프로세서
■ 33,600bps 콤팩트 디스크 드라이브
■ 12.1" TFT 대형화면



빠른것이 경쟁력 - 삼성 노트북 PC 센스

Smart & Soft

SAMSUNG

삼성전자



24시간 PC지원센터 (서비스접수 및 상담) : 서울 02-3451-3366 · 인천 02-3266-3366 · 부산 065-3366 · 대구 054-3366 · 광주 265-3366 · 대전 042-3366 (7기타지역은 가까운 삼성전자 대리점에 문의) ■ 고객상담실 (제품문의 및 고객불만상담) : 대표 02-541-3000 · 콜로케이션 080-022-3000 수시상담부 · PC통신 (유니텔, 천리안, 한이텔, 나무누리) : GO SEC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co.kr ■ 컴퓨터무선망과 신형접수처 : 서울 080-990-2222 · 경기 031-3366 · 강원 033-3366 · 대전 042-3366 · 광주 265-3366 · 전북 061-3366 · 대구 054-3366 · 부산 065-3366 · 제주 080-981-3333